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11

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이형석・임호선・안규백

이병훈・최기상・노웅래

한준호 • 이해식 • 이수진

김민기 • 민형배 • 서영교

이성만 · 홍익표 · 이용빈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소속 기관이나 지방공사·지방 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 어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 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 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.
 -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	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
<u><신 설></u>	제7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
	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
	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
	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
	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
	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	<u>송부하여야 한다.</u>
	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
	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
	한다.